

누구를 출생신고 해야 하나?

- * 해외에 살더라도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외 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공식적인 증명방법이 됩니다.
- * 출생 당시에 부모가 혼인한 상태이고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 있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합니다. 다만 1998. 6. 14. 이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부모가 혼인한 상태에서 태어났더라도 외국인 부의 국적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출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998. 6. 14.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 부의 국적과 함께 한국인 모의 국적을 함께 취득하므로 출생신고 대상입니다.
- * 출생 당시에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가 한국 국적이 있으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의 부 또는 한국 국적의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출생 당시에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는데 모가 외국 국적이고 부가 한국 국적이라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가 외국 국적의 자녀를 인지한 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국 국적이 후천적으로 취득되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요령

- * 재외공관에 전자송부신청을 할 경우 우편제출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됨을 알려드립니다.
- * 출생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첨부서면이 누락된 경우, 출생신고의 수리 및 기재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출생신고서 각 란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국인을 신고서에 기재할 때는 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 대신 국적을 기재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기재하시고 없으면 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성명란과 주소란에 외국성명과 외국주소를 기재할 때는 그 원지음을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1. ①출생자란의 경우

가. 1)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할 경우 한글로만 이름이 기재되고,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출생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3) 자녀의 성분의 경우

가)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원칙은 부의 성분을 따릅니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성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분은 모의 성분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의 성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 혼인외의 자녀인 경우 원칙은 모의 성분을 따릅니다. 다만 모가 부의 성분을 알 수 있고 그 부가 한국인이란 부의 성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 출생자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경우 해당 출생수리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마. 1) 출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출생장소가 외국지명이면 그 원지음을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복수국적을 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으로 즉시 소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취득한 복수국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②부모란의 경우

가. 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란에 부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 부란에 부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다. 모가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하고 그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라. 부모가 혼인신고 했을 때 모의 성분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④기타사항란의 경우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 출생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5. ⑤신고인란의 경우

가.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 1) 부 또는 모가 신고인입니다.
- 2)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동거친족과 분만에 관여한 자 등의 순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 1) 모가 원칙적으로 신고인이고, 부는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한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다만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동거친족과 분만에 관여한 자 등의 순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류 기재 보정을 위한 연락처 기재 요망

신고서의 기재 누락 또는 첨부해야 할 서면 누락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이 연락하여 보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족친지의 전화번호 등을 추가하여 신고인란 또는 제출인란 여백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면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를 출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한글번역문.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를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했을 때까지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 출생자의 모가 한국 국적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 (1998. 6. 14. 이후부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은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합니다).
4.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해당국가의 여권, 미국 처럼 출생지의 국적을 선천 취득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1부.
6. 가. 첨부서면이 외국어서류인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나. 한글번역문에는 ①당사자의 인적사항, ②출생연월일, ③해당 외국어서류를 작성한 외국기관명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반드시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7. 가.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라.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나.다.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